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¹⁾

김선종*

1. 서론

종교를 그 라틴어 어원에 따라 ‘경전을) 다시 읽다(relego)’ 혹은 ‘신과 인간을) 다시 묶다(religo)’로 설명하든,²⁾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³⁾로 정의하든, 종교가 신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은 오토(R. Otto)와 엘리아데(M. Eliade)의 종교학 고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⁴⁾ 종교적인 것, 성스러운 것은 절대 타자와 관련하여 세속을 초월하고 세상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교가 정치와 경제 등 세상의 문제에서 초탈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으로는 옳지만, 이러한 생각이 단순화될 경우 종교의 본질을 오도할

*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NRF-2013S1A5A8025581), 2013년 4월 19일 한영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제9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귀한 논찬을 해주신 배정훈, 이상혁 박사님께 감사한다.

2) B. M. Wheelock, *Latin: An Introduction Course Based on Ancient Authors* (New York: Barnes & Nobles, 1963), 425, 435.

3)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 루돌프 오토, 『성스러운 것의 의미: 신관념에 있어서의 비합리적 요소 그리고 그것과 합리적 요소와의 관계에 대하여』, 김희성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4);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3).

위험도 가지고 있다.⁵⁾ 이미 오래전 구약 주변 세계와 히브리 성경에서 조차 신과 인간, 혹은 신과 그 백성의 관계는 정치 조약의 언어와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⁶⁾ 고대 민족의 신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반대로 백성은 신이 부여하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의무가 있다. 특별히 이러한 쌍방의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 ‘계약(ברית)’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신이 제정한 계명은 단지 종교나 윤리 차원의 율법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안에서,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제 질서도 다루고 있다.⁷⁾ 고대로부터 정치, 경제, 종교는 완전히 이질적이지 않고, 인간 현실의 동일한 근원을 각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는 정치와 경제 등 세속의 문제를 초월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포괄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 국가와 정치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말한 근대의 정치철학자 홉스(T. Hobbes)가 정치론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 실체, 속성에 대해 자신의 사상을 표출한 것은 이러한 거룩함과 속됨이 가지고 있는 뿔 수 없는 관계를 잘 보여준다.⁸⁾

이 연구는 정치와 종교, 경제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인류

5) 신학이 경제학과 유리될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M. D. Meeks,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19-21를 참조하라.

6) G. E. Mendenhall and G. A. Herion, “Covenant,” ABD 1, 1179; J.-G. Heintz, “Alliance humaine-Alliance divine: documents d’époque babylonienne ancienne & Bible hébraïque-Une esquisse-,” BN 86 (1997), 66; 박준서, 김영진, “고대 근동의 국제 관계와 국제 조약에 관한 비판적 연구,” 『구약논단』 12 (2002), 171-211.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계약 신학적 조망을 위해서는 박신배, “계약 신학의 새로운 모색,” 『신학사상』 149 (2010), 65-92를 참조하라.

7) 구약 주변 세계의 법에 대한 일부 본문과 이에 대한 우리말 연구를 위해서는 김영진, 『율법과 법전: 율법과 고대근동의 법 연구』 (서울: 한들, 2005); 채홍식 역주, 『고대 근동 법전과 구약성경의 법』 (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8) 김용환, 『리바이어던: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 (과주: 살림출판사, 2008), 96-149.

문명의 근원 중 하나인 고대 중동 문명과 구약 성경의 법전 중 하나인 성결 법전에서 그 이론적 해답을 찾으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종교 법전으로서의 성결 법전이 내포하고 있는 계약 신학을 연구하고, 계약 신학의 틀로 성결 법전을 바라봄으로써, 성결 법전과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을 바르게 이해하는 동시에, 국제 정치 조약과 경제 윤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에 대한 하나의 착안점을 제공하려 시도할 것이다.

2. 연구사

계약 신학은 이미 구약 일반과 특정 인물, 또한 구약 주변 세계의 조약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 결과를 낸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아이히로트(W. Eichrodt)는 그의 『구약신학』에서 ‘계약이라는 틀로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고,⁹⁾ 폰 라트(G. von Rad)는 시내 산 계약과 신명기 계약의 공통 구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계약 신학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추적한다.¹⁰⁾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과 맺은 언약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 형태와의 유비를 발견하려고 시도한다.¹¹⁾ 그런데 당시 구약 주변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교 계약이나 정치 조약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약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9) W. Eichrodt,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Teil 1-3 (Leipzig: J. C. Hinrichs, 1933-1939).

10) G. von Rad,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E. W. T. Dicken, trans. (Edinburgh: Oliver & Boyd, 1966), 1-78.

11) 예를 들어, W. Zimmerli, “Sinaibund und Abrahambund.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der Priesterschrift,” *TbZ* 16 (1960), 268-280; G. E. Mendenhall and G. A. Herion, “Covenant,” 1188-1190; B. W. Anderson, *Contours of Old Testament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79-236.

신명기에 나타난 계약 사상을 주전 14-13세기의 히타이트 조약,¹²⁾ 혹은 주전 7세기 앗시리아의 에살하돈 조약¹³⁾에 비추어 연구한 것은 이들 책에 나타난 계약 신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들의 연구를 따르면, 구약 성경은 진공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의 문학, 종교, 정치와 소통하며, 특별히 신명기의 구조와 신학은 구약 주변 세계의 정치 조약을 요시아 당시 신학화한 것에 해당한다.¹⁴⁾ 즉, 신명기 저자는 구약 주변 세계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존재하는 종주와 봉신 사이의 관계를 진정한 왕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로 치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명기 법전과 고대 근동의 정치 조약에 대한 연구에 비해 성결 법전에 암시되어 있는 계약 신학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뷔(P. Buis), 로퐁크(N. Lohfink), 또한 최근에 요스텐(J. Joosten)이 성결 법전에 나타난 계약 신학에 대하여, 계약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단락과 관련하여 일부(Buis, Lohfink), 성결 법전 자체 내의 기능을 파악하는 포괄적인 방식(Joosten)으로 연구하기도 하였다.¹⁵⁾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신명기 법전의 계약 신학이나 시내 산

12) G. E. Mendenhall, "Covenant Forms in Israelite Tradition," *BA* 17 (1954), 50-76.

히타이트 법과 그 법의 도덕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종근, "히타이트 법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 (2010), 27-52를 참조하라.

13) R. Frankena,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and the Dating of Deuteronomy," *OTS* 14 (1965), 122-154; M. Weinfeld, "The Loyalty Oath in the Ancient Near East," *UF* 8 (1976), 397-414; H. U. Steymans, *Deuteronomium 28 und die adē zur Thronfolgeregelung Asarbaddons: Segen und Fluch im Alten Orient und in Israel*, OBO 145 (Freiburg Schw: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이 조약과 신명기의 병행 본문을 위해서는 J. 맥스웰 밀러, 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497-500; 박준서, 김영진, "고대 근동의 국제 관계와 국제 조약에 관한 비판적 연구," 205-207을 보라.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위해서는 장미자, "에살하돈 조약(VTE) 저주와 신명기 언약 저주(28장) 비교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제언," 『Canon&Culture』 3 (2009), 5-36을 참조하라.

14) M. Weinfeld, "ברית b'rit," *TDOT* II, 268; idem, *Deuteronomy 1-11*, AB 5 (New York: Doubleday, 1991), 25-37.

계약에 대한 연구에 비해 수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통적인 역사 비평의 관점에서 볼 때 제사장 문서(P)와 성결 법전(H)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이전에 존재한 문서와 전승들에 대한 조합이라는 벨하우젠(J. Wellhausen) 식의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로핑크는 성결 법전에 나타난 ‘계약이라는 용어는 제사장적이지만 그 신학은 오히려 신명기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성결 법전이 제사장 문서의 신학과 신명기 신학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신명기 학파로부터 계약 신학이 도입되었다는 맥커티(D. J. McCarthy)의 주장과 궤를 함께 한다.¹⁶⁾ 이들이 객관적인 역사의 토대 위에서 성서 본문을 이해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제사장 문서와 성결 법전이 이처럼 단순하게 신명기 문서를 전제로 하여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볼 때, 이들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계약 신학의 존재 이유와 그 의미를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요스톤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성결 법전에 나타난 ‘계약이라는 용어의 용례를 통하여 레위기 26장을 분석하고 있으며,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은 단순히 신명기 법전처럼 국제 조약과의 연속성 위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 법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요스톤은 성결 법전이 단순히 신명기 법전을 전제로 하여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신명기와는 다른 전승과 기원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문서라는 가설을 발전시킨다.¹⁷⁾ 즉, 그는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을 단지 신명기 법전의 계약 신학의 관점에서

15) P. Buis, *La notion d'alliance dans l'Ancien Testament*, LD 88 (Paris: Cerf, 1976), 86-91; N. Lohfink, "Die Abänderung der Theologie des priesterlichen Geschichtswerks im Segen des Heiligkeitgesetzes. Zu Lev. 26,9.11-13," H. Gese und H. P. Rüger (Hg.), *Wort und Geschichte*, FS K. Elliger, AOAT 18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73), 129-136; J. Joosten, "Covenant Theology in the Holiness Code," *ZABR* 4 (1998), 145-164.

16) D. J. McCarthy, "ʿĕrît in Old Testament History and Theology," *Bib* 52 (1972), 111.

17) J. Joosten, "Covenant Theology in the Holiness Code," 150-164.

이해하지 않고 성결 법전 자체의 신학과 언어, 또한 문서의 체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신명기의 계약 신학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성결 법전의 계약 사상이 구약 주변 세계의 종교와 가지고 있는 유비를 간과하는 점에서 그의 결론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성결 법전도 구약 주변 세계의 후기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조약 체결 양식과 내용과 형식¹⁸⁾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조약과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또한 성결 법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만 강조할 경우, 참된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세속과의 소통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것은 종교의 본질과 사회적 기원 자체를 무시하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성결 법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바탕으로 하여, 구약 주변 세계의 정치 조약과의 유비, 성결 법전이 가지고 있는 경제 윤리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종교의 법전이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포괄성을 밝히려고 시도할 것이다.

3. 성결 법전과 계약

3.1. 성결 법전과 성결 법전의 거시 구조

성결 법전은 1877년 클로스터만(A. Klostermann)이 레위기 17-26장에 이름을 지어 붙인 것으로¹⁹⁾ 지금까지도 성결 법전의 존재 여부,

18) A. Grayson, "Akkadian Treaties of the Seventh Century B. C.," *JCS* 39 (1987), 127-160; S. Parpola, "Neo-Assyrian Treaties from the Royal Archives of Nineveh," *JCS* 39 (1987), 161-189 등 참조.

19) A. Klostermann, "Beitrag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ZLTK* 38 (1877), 401-445. 개괄적인 우리말 연구를 위해서는 채홍식, "성결 법전(레 17-26)의 형성에 관한 고찰-레 19:3-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 (2000),

연대, 구조 등에 대하여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²⁰⁾ 이 이름의 근거는 레위기 19-22장에 나오는 ‘나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9:2; 20:7, 26; 21:8; 22:35)라는 문구인데, 크놀(I. Knohl)이 레위기 이외의 본문에서 성결 법전 저작의 흔적을 발견한 이래,²¹⁾ 일부 학자들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동일 문구도 성결 법전에 속하는 것으로 여긴다.²²⁾ 성결 법전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학자들이 성결 법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레위기 17-26장이 계약 법전(출 20:22-23:33)과 신명기 법전(신 12-26)의 거시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²³⁾

<표 1>

	계약 법전	성결 법전	신명기 법전
주 계명: 제물 봉헌과 그 장소	출 20:22-26	레 17	신 12:1-14:21
사회적·제의적 개별 계명들 직무들(사사, 제사장) 제의적·사회적 개별 계명들	출 21:1-23:19	레 18-20 레 21-22 레 23-25	신 14:22-16:17 신 16:18-18:22 신 19-25
축복과 저주	출 23:20-33	레 26	신 27-28

59-82를 참조하라.

20) 예를 들어, C. R. Smith, “The Literary Structure of Leviticus,” *JSOT* 70 (1996), 17-32는 문학 구조에 따라 ‘율법(레 1-7장)-이야기(레 8-10장)-율법(레 11-15장)-이야기(레 16장)-율법(레 17:1-24:9)-이야기(레 24:10-23)-율법(레 25-27)’으로 구분한다. M. Douglas,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10의 대칭 구조도 성결 법전의 구조를 무력화시킨다.

21)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22) E. Firmage, “Genesis 1 and the Priestly Agenda,” *JSOT* 82 (1999), 113-114; J. Milgrom, *Leviticus 1-16,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39-42.

23) 아래의 표를 위해서는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2), 147, 294-295를 참조하라.

3.2. 성결 법전의 '계약의 용례

일반적으로 계약 행위와 관련된 동사는 계약 체결, 계약 유지, 계약 폐기로 범주화할 수 있다.²⁴⁾ 이에 따라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10회(레 2:13; 24:8; 26:9, 15, 25, 42[x3], 44, 45), 성결 법전에 9회 나타나는 '계약을 계약 체결 범주에 따라 계약 행위자와 함께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²⁵⁾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26:9)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26:15)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26:25)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26:42)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

24) P. Buis, *La notion d'alliance dans l'Ancien Testament*, 16-21.
25) 본 논문에서는 성결 법전에서 계약 체결의 행위에 따른 '계약의 용례만을 다룬다. 따라서 레위기 24:8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 '영원한 계약은 다음 절에 나오는 '영원한 규례(עֲוֹן־קָן)'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성경을 인용할 경우 『개역개정』을 활용한다.

라 나는 여호와이니라(26:44-45)

<표 2>

	26:9	26:15	26:25	26:42(x3)	26:44	26:45
동사	קָם 체결, 유지	פָּרַר 폐기	קָם 폐기	זָכַר 유지	פָּרַר 폐기	זָכַר 유지
계약	בְּרִיתִי 나의 계약	בְּרִיתִי 나의 계약	בְּרִית 계약	בְּרִיתִי 나의 계약	בְּרִית 나의 계약	בְּרִית 계약
상대자	너희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들	그들의 조상

독자들은 위의 구절에서 몇 가지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계약 체결이나 유지가 3회, 계약 폐기가 3회 나타남으로, 계약의 유지와 폐기에 대한 긴장이 명확하게 대조된다. 또한 만일 42절에 나타나는 계약 본문이 성결 법전에 나타난 계약 체결의 상대자가 아니라, 창세기의 조상과 맺은 과거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 대상 본문에서 제외한다면, ‘계약 체결-세 차례에 걸친 폐기-계약 유지’의 구조로, 하나님은 계약이 폐기될 위험 속에서도 자신이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유지하신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구약에서 계약을 체결(‘카라트 브리트[כרת ברית]’)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동사는 ‘카라트’인데 비해(오경에서 창 21:32; 26:28; 31:44; 출 34:10, 12, 15, 27; 신 5:2; 7:2), 레위기 26장 9절은 ‘쿰’의 사역형 ‘헤캬’를 사용하고 있다(הכים ברית). 이는 제사장 문서와 성결 법전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표현으로(창 6:18; 9:9, 11; 17:7, 19, 21; 출 6:4; 겔 16:60, 62; 참조, 신 8:18), 계약 체결에서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²⁶⁾ 이러한 제사장 전문 용어가 계약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될 때, ‘체결하다’(창 9:9), ‘유지하다’(겔 16:60에서 זָכַר와 병행), 또는 ‘성취하다’(신 8:18)로 해석할 수 있다.²⁷⁾ 다른 한편, 계약

26) S. Amsler, “קָם qūm austehen,” THAT 2, 640.

27) J. Milgrom, *Leviticus 23-27*, AB 3B (New York: Doubleday, 2001), 2343은 이전에

폐기와 관련된 동사와 명사는 각각 ‘파라르’(פּרַר)와 ‘나캄’(נָקַם)으로 ‘헤킴 브리트’의 반의어에 해당한다. 계약의 복수(나캄)는 봉신이 종주를 배반하여 그와 맺은 계약을 어겼을 경우 종주가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며,²⁸⁾ 이러한 나캄의 용례는 주전 8세기의 아람어 세피레 조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Sefire II, 11-12; III, 22).²⁹⁾

둘째, 레위기 26장에서 계약과 관련된 구절은 ‘나의 계약-나의 계약-계약-나의 계약-나의 계약-계약-계약’으로 심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AABAAB). 히브리어 ‘계약이 쌍방의 계약, 즉 쌍무 계약을 의미하는지, 일방적인 편무 계약이나 의무³⁰⁾를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레위기 26장에 네 차례 나타나는 ‘나의 계약에서의 일인칭 소유 접미사 ‘나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닌 것을 드러낸다.³¹⁾ 또한 동시에 ‘나의’(하나님의) 계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했다는 내용은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실

이미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완성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8) 레위기 26:25에서 ‘계약과 관련된 복수의 의미를 위해서는 참조, H. G. L. Peels, *The Vengeance of God: the Meaning of the Root NQM and the Function of the NQM-Texts in the Context of Divine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OTS 31 (Leiden-New York-Köln: Brill, 1995), 83-86, 102-109.

29) 세피레는 시리아의 알렘포에서 남서쪽 22Km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세피레 조약을 위해서는 A. Dupont-Sommer and J. Starcky, “Une inscription araméennes de Sfiré (stèles I et II),” *BMB* 13 (1958), 1-125; J. A. Fitzmyer, *The Aramaic Inscriptions of Sefire*, *Biblica et Orientalia* 19/A (Rom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5); KAI, 222 A를 참조하라. 세피레 조약과 오경의 법전의 관련을 위해서는 참조, 최중원, “복서 셴어에 나타난 계약 본문 안에서의 ‘쉐바’(עֵבָא)-스피르(S^cfire) 비문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6 (2011), 123-151; 최중원, “레위기 26장 14-33절에 나타난 숫자 칠의 의미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47 (2013), 12-42; H. F. van Rooy, “The Structure of the Aramaic Treaties of Sefire,” *JSem* 1 (1989), 133-139는 세피레 조약과 아래의 3.4.에 나오는 앓수르 조약의 구조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30) E. Kutsch, “ברית obligation,” *TLOT* I, 256-266. ‘계약’의 어의에 대한 우리말 연구를 위해서는 노희원, “구약의 계약(ברית)에 대한 어의론적 연구,” 『신학논단』 12 (1995), 5-35를 참조하라.

31) H. G. L. Peels, *The Vengeance of God*, 107.

을 강조하기도 한다.³²⁾

셋째,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폐기는 하나님(44절) 뿐만 아니라 백성(15절)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성이 하나님의 계약을 업신여기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사실은 백성들을 지시하는 인칭대명접미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성결 법전에서 법전을 수여받는 대상인 이스라엘이 항상 2인칭으로 등장하는 반면, 26장에서 3인칭 ‘그들’은 부정적인 내용의 단락에서 주로 등장하여(26:7, 36, 37, 40, 41, 43, 44)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나타내기도 한다.³³⁾ 그러나 성결 법전의 실제적인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패역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26:45)

그런데 이러한 ‘계약이라는 용어는 레위기 26장에서 산발적으로 모여 위와 같은 질서를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레위기 26장의 구조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성결 법전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단서로 작용한다.

3.3. ‘계약에 따른 레위기 26장의 구조

주석가들이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 레위기 26장의 구조를 다르게 제안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계약이라는 단어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지키면 영과 물질의 복을 받고(3-13절),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며(14-41, 43절), 이러한 심판과 저주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리라는 내용으로 레위기 26장을 분석한다(42, 44-45절).

32) J. E. Hartley,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464.

33) 이러한 3인칭의 용법은 예언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아모스 1-2장에서 심판의 대상은 전형적으로 3인칭으로 나타난다(암 1:3, 6, 9, 11, 13; 2:1, 4, 6).

<표 3>

	Hartley, ³⁴⁾ Milgrom ³⁵⁾	Buis ³⁶⁾	Joosten ³⁷⁾
축복	3-13절	3-13절	3-13절
저주	14-29절	14-33절	14-41, 43절
회복	40-45절	34-45절	42, 44-45절
결론	46절	46절	46절

레위기 26장에 대한 이러한 삼중 구조는 ‘계약이라는 용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야훼는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것이고(9절), 순종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실 것이지만(15절), 결국 하나님은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시리라는 것이다(44-45절). 따라서 계약에 대한 폐기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단순한 복수(כּפּוּן)가 아니라, 그들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율례는 위의 성결 법전의 거시 구조에 나타난 17-25장, 더 나아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내 산에서 선포된 레위기 1-25장의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4. 성결 법전의 조약 체결 양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석가들이 ‘계약이라는 용어에 따라 레위기 26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약 신학에 따라 성결

34) J. E. Hartley, *Leviticus*, 456-457.

35) J. Milgrom, *Leviticus* 23-27, 2289-2290.

36) P. Buis, *La notion d'alliance dans l'Ancien Testament*, 86-91.

37) J. Joosten, "Covenant Theology in the Holiness Code," 150-152.

법전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결 법전은 비록 신명기 법전처럼 예살핌의 조약의 구조에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 법전의 구성 요소와 유사한 내용들을 산발적으로 지니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³⁸⁾

1) 먼저 조약 체결 양식³⁹⁾의 서문(preamble)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등장한다. 성결 법전에 52회 등장하는 ‘나는 야훼다(אני יהוה)’라는 야훼 인지 양식⁴⁰⁾이 바로 계약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에 해당한다.⁴¹⁾ 콜레빈스키(A. Cholewiński)와 크놀(I. Knohl)은 야훼의 일인칭 언설(Ich-Rede)이 제사장 토라(Priestly Torah)와 구별되는 성결 학파(Holiness School)의 독특한 표현임을 밝힌다.⁴²⁾ 물론 이러한 야훼의 자기 계시 양식은 출애굽기의 이야기 단락(출 6:6 등)과 십계명 서두(출 20:2, 5; 신 5:6, 9; 참조, 너의 하나님 야훼)에도 나타난다. 반면 성결 법전에서 야훼 계시 양식의 특징적인 점은 이 양식에 ‘너희/그/그들을

38) J.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A Survey of Parallels betwee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exts* (Grand Rapids: Zondervan, 1989), 105. 비록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용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용과 문맥이 계약 신학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 참조, M. Silva,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101-112.

39) 이 글에서는 구약 주변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약 체결 양식과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계약 체결 양식(covenant formula)-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레 22:33; 25:38; 26:45 등)-을 구분한다.

40) J. Begrich, “Das priesterliche Heilsorakel,” *ZAW* 52 (1934), 81-92.

41) 단형(나는 야훼다): 레위기 11:44, 45; 18:5, 6, 21; 19:12, 14, 16, 18, 28, 30, 32, 37; 21:12; 22:2, 3, 8, 30, 31, 33; 26:2, 45. 장형(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다): 레위기 18:2, 4, 30; 19:2, 3, 4, 10, 25, 31, 34, 36; 20:7, 24; 23:22, 43; 24:22; 25:17, 38, 55; 26:1, 13, 44.

42) A. Cholewiński, *Heiligkeitsgesetz und Deuteronomium: Eine vergleichende Studie*, *Analecta Biblica* 66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6), 137;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106-110.

거룩하게 하는⁴³⁾ 야훼로 묘사함으로써, 오경의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성결 법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한다.⁴⁴⁾

2) 둘째로, 구약 주변 세계에서 종주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다음에, 봉신에게 베푸는 역사를 서술하는데, 성결 법전에서 이에 해당하는 구원사(historic prologue)에 대한 서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역사에 해당한다. 레위기는 출애굽 이후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는 맥락 안에 기술되어 있는데, 성결 법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출애굽 주제가 등장한다(레 19:35-36; 22:32-33; 23:42-43; 25:38, 42, 55; 26:13, 45 등).

출애굽 관련 본문들에서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먼저, 출애굽은 '주인의 변화'(change of master)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⁴⁵⁾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의 노예로 살아야 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고 자신의 노예로 삼으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더는 노예가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다(25:42, 55). 애굽에서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의 노예(עַבְד)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עַבְד)으로 변화한다. 둘째로, 출애굽 관련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22:33; 25:38; 26:45).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 체결 양식은 출애굽

43) 성결 법전의 특수 용법(나는 너희/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다): 레위기 20:8, 26; 21:8, 15, 23; 22:9, 16, 32; 참조, 출애굽기 31:13; 에스겔 20:12.

44) 예살핫돈 조약에는 서문 다음에 증인으로서 신들의 명단이 나온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체결에서 신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늘과 땅이 이러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암시하는 본문을 찾을 수 있다(신 4:26; 31:28; 32:1; 사 1:2 등). 참조, 박준서, 김영진, "고대 근동의 국제 관계와 국제 조약에 관한 비판적 연구," 202-203.

45) D. Daube, *The Exodus Pattern in the Bible*, All Souls Series (London: Faber and Faber, 1963).

사건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양식이다. 셋째, 애굽에서의 해방 역사를 통하여 야훼가 백성들의 참 하나님이 되었다면, 반대로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19:36; 22:32-33). 즉,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율법 준수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⁴⁶⁾ 이러한 점에서 제사장 문서와 성결 법전에서 계약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 주셨다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한다는 짐멜리(W. Zimmerli)의 주장⁴⁷⁾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다면,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시기 위해 그들이 자치적으로 거주할 땅을 주신다.

<표 4>

주인	바로	야훼
신분	바로의 노예(עַבְדֵי־מִצְרַיִם)	야훼의 노예, 야훼의 종(עַבְדֵי־יְהוָה)
거주지	애굽	가나안 땅, 성소

3) 셋째로, 구체적인 계약에 대한 법률적 의무 조항(stipulations)은 성결 법전, 더 나아가 레위기 1-15에 나타나고 있는 가정, 사회, 경제, 종교의 영역에서 지켜야 할 모든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위의 출애굽 동기만을 살펴보더라도, 경제(25:38, 42, 55), 사회, 재판(19:35-36; 26:13), 종교(22:32-33; 23:42-43; 25:38; 26:45) 등 여러 차원에서 비롯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성결 법전에 이처럼 여러 차원의 윤리적 계명들이 제정된 것에 대해 요스텐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종교적인 목적으로 해석하지만,⁴⁸⁾ 이는 성결 법전

46) 참조, J. Joosten, "Covenant Theology in the Holiness Code," 153.
 47) W. Zimmerli, "Sinaibund und Abrahambund," 205-216.
 48) J. Joosten,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SVT 67 (Leiden-New York: Brill, 1996), 117-118.

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협소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성결 법전이 규정하는 의무 조항은 단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구체화된다.

성결 법전의 마지막 구절(26:46)은 삶의 여러 차원에서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성결 법전의 종교성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읽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קְּרָאָה)와 법도(מִצְוָוֹת)와 율법(תּוֹרָה)이니라

여기에서 규례, 법도, 율법은 각각 ‘후크’, ‘미쉬파트’, ‘토라’의 복수 형태인데, ‘규례’와 ‘법도’는 성결 법전에만 나타나지만,⁴⁹⁾ ‘율법’은 제사장 문서에만 나타나는 점⁵⁰⁾은 곧 레위기 26장에 나타나는 계약 준수를 위한 율례를 레위기 1-25장에서 포괄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⁵¹⁾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규정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 26장에서 언급하는 안식년에 대한 조항이 계약 위반 사항에 핵심적이다(26:10, 34, 35, 43). 이는 안식년에 대한 조항이 하나님과 백성과 땅이 삶의 여러 측면에서의 조화로운 관계를 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는 이상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⁵²⁾

4) 마지막으로 구약 주변 세계의 정치 조약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축복과 저주’(blessings and curses)의 단락으로서 이는 레위기 26장

49) 규례(17:7; 18:3, 4, 5, 26; 19:19, 37; 20:8, 22; 23:14, 21, 31, 41; 24:3, 9; 25:18; 26:3, 15, 43, 46), 법도(18:4, 5, 26; 19:37; 20:22; 25:18; 26:15, 43, 46).
50) 율법(6:2, 7, 18; 7:1, 7, 11, 37; 11:46; 12:7; 13:59; 14:2, 32, 54, 57; 15:32).
51) J. E. Hartley, *Leviticus*, 471; A. Marx, *Lévitique 17-27*, CAT IIb (Genève: Labor et Fides, 2011), 211.
52) S.-J. Kim, *Se reposer pour la terre, se reposer pour Dieu: l'année sabbatique en Lv 25,1-7*, BZAW 430 (Bosto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2), 22-25.

전체를 장식한다. 이러한 축복과 저주 단락은 신명기 28장과 함께 구약 성경에서 특징적으로, 구약 주변 세계의 계약 체결 의식의 결론부와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주석가들은 이러한 저주와 축복이 가지고 있는 제의적 기능⁵³⁾과 사회적 기능⁵⁴⁾을 밝힌 바 있다.

요스텐은 성결 법전이 신명기와 같은 방식, 즉 축복과 저주로 법전이 마무리되는 것이 반드시 신명기의 영향이 아니라, 성결 법전 자체의 내적인 구조와 신학에서 온 것으로 여긴다.⁵⁵⁾ 즉,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레위기 26장은 농촌을 배경으로 복의 내용이 구성되고 있고, 이에 비해 신명기 28장은 국제 무역 관계도 언급한다. 레위기 26장이 ‘원수의 땅(레 26:34, 36, 38, 39, 41, 44)에서 벌어진 화를 이야기하는 반면, 신명기 28장은 ‘원수(신 28:7, 25, 31, 48, 53, 55, 57, 68)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이는 레위기가 땅의 생명성과 거룩성, 신명기가 백성의 거룩함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일반적인 성격에 부합한다.⁵⁶⁾ 그러나 레위기와 신명기가 서로 다른 사회 배경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결 법전이 당시의 주변세계에서 잘 알려진 정치 조약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결 법전은 단지 성소 안에서의 거룩함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세속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제사장 신학의 관점에서 포섭하고 있다고

53) K. Elliger, *Leviticus*, HAT 4 (Tübingen: J. C. B. Mohr, 1966), 371.

54) J. S. Anderson, “The Social function of Curses in the Hebrew Bible,” *ZAW* 110 (1998), 223-237.

55) J. Joosten,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117-118; D. R. Hillers, *Treaty-Curses and the Old Testament Prophets*, *Biblica et Orientalia* 16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4), 42와 A. Cholewiński, *Heiligkeitsgesetz und Deuteronomium*, 319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한다.

56)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김선중, “성결 법전의 땅,” 『*Canon&Culture*』 5 (2011), 145-171을 참조하라.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3.5. 성결 법전의 경제 윤리

성결 법전이 구약 주변 세계의 정치 조약의 형식을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정치의 틀을 신학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결 법전의 독자들은 성결 법전의 주제인 ‘거룩함’이 여러 세속의 삶 가운데에서 경제의 영역에서도 구체화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레위기 17-26장의 성결 법전에서 이러한 경제 윤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레위기 19장과 25장이다. 먼저 레위기 19장은 18-20장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성 윤리(18장)-거룩한 삶(19장)-성 윤리(20장)’의 열개 안에서 전개된다. 십계명 단편이 들어있는 레위기 19장은 앞뒤로 근친상간에 대한 성 윤리가 둘러싸고 있음으로, 거룩함은 남녀 사이의 가장 은밀함 가운데에서조차 이룩해야 함을 말한다. 레위기 19장을 1-8절, 9-18절, 19-37절의 세 부분으로 나눌 때, 특별히 9-18절은 ‘나는 야훼다라는 후렴구를 기준으로 다섯 부분의 경제와 관련된 삶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9-10절; 23:22 참조), 진실에 대한 존중(11-12절), 품꾼과 힘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13-14절), 부유한 사람에 대한 존중(15-16절), 이웃에 대한 존중(17-18절)이 그러하다.⁵⁷⁾ 또한 19장의 셋째 부분에서는 공평한 저울과 저울추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35-36절)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점은 성결 법전이 거룩함을 이룩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경제의 영역에서 정의로운 방식으로 부를 산출하고 소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⁵⁸⁾

57) 윌터 카이저, 『구약성경윤리』, 홍용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139-144.

58) 강성열, “구약성서의 경제 윤리와 사회정의,” 『신학이해』 17 (1999), 16-25; 박동

다음으로 레위기 25장은 1-7절의 안식년 법과 8-55절의 희년 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두 규정 모두 경제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은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을 다루고 있는 26장과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는데, 레위기 25장 1절과 26장 46절의 ‘시내 산’이 이들 두 장의 수미쌍관 구조를 이룬다. 이는 곧 레위기의 안식년이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이상적인 관계를 규정하고,⁵⁹⁾ 희년에 동족에게 팔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얻고, 잃어버린 자신의 땅을 되찾는 경제의 측면에서의 원상태를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 관계가 완성됨을 가리킨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레위기의 선언(25:23)은 결국 땅 위에서 벌어지는 재화 창출과 소비 등의 모든 경제 활동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⁶⁰⁾ 계약 법전과 신명기 법전에서의 노예 해방법(출 21; 신 15)과 달리, 성결 법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됨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족에게 팔릴 때 거류민이나 동거인(גֵּר תּוֹמֵךְ)처럼 대할 것을 명함으로써(25:35) 종에 대한 주인의 권리를 제한한다.⁶¹⁾ 이는 결국 경제의 문제로 유린된 인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신학 사상을 반영한다. 성결 법전의 저자는 이처럼 가난해진 동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고 밝힌다(25:36).⁶²⁾

물론 오경의 계약 법전과 신명기 법전에서도 위와 같은 경제 윤리와 관련된 병행 본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인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경제 윤리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성결 법전은 이러한 계명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현하는 신학의 차원으로 고양시

현, “구약의 경제윤리(II),” 『구약논단』 7 (1999), 142-144.

59) S.-J. Kim, “Les enjeux théologiques des bénéficiaires de l’année sabbatique (Lev 25,6-7),” *ZAW* 122 (2010), 33-43.

60) 크리스토퍼 라이트,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69-72.

61) E. Otto, *Theologische Ethik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1994), 83.

62) 박동현, “구약의 경제윤리(I),” 『구약논단』 6 (1999), 25.

키는 데에 성결 법전의 독창성이 있다.

4. 결론

대부분 서구의 학자들은 구약의 계약 사상은 신명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사장 문헌이나 성결 법전이 표방하는 계약 신학은 신명기의 계약 신학을 전제로 포로기 이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최근에 성결 법전이 신명기와 다른 신학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부터,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이 신명기의 계약 신학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강조한 연구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약 주변 세계의 조약 체결 구조에 비추어 성결 법전을 읽을 때, 그 안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계약의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결 법전은 국제 조약에 무지한 제사장 그룹의 산물이 아닌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성결 법전이 그 종교성과 함께, 정치와 경제 윤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학의 창조성이 드러난다. 이 지점에서 거룩함이 바로 사회적 의미로 발현되고 사회적 차원으로 고양되는데, 성결 법전이 표방하는 거룩함은 성소의 울타리를 벗어나, 종교와 사회, 가정과 국가, 정치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성결 법전, 계약 신학, 에살핫돈 조약, 레위기 26장, 종교와 정치

<Key Words>

Holiness Code, Covenant Theology, VTE, Leviticus 26, Religion and Politics

* 접수일 2014년 2월 20일, 수정일 2014년 2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4년 3월 4일

참고문헌

- 강성열, “구약성서의 경제 윤리와 사회정의,” 「신학이해」 17 (1999), 9-65.
- 김선중, “성결 법전의 땅,” 「Canon & Culture」 5 (2011), 145-171.
- 김영진, 『율법과 법전: 율법과 고대근동의 법 연구』, 서울: 한들, 2005.
- 김용환, 『리바이어던: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 과주: 살림출판사, 2008.
- 노희원, “구약의 계약(תּוֹרַת)에 대한 어의론적 연구,” 「신학논단」 12 (1995), 5-35.
-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신관념에 있어서의 비합리적 요소 그리고 그것과 합리적 요소와의 관계에 대하여』, 길희성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4.
-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3.
- 밀러&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 박동현, “구약의 경제윤리(I),” 「구약논단」 6 (1999), 5-26.
- 박동현, “구약의 경제윤리(II),” 「구약논단」 7 (1999), 139-164.
- 박신배, “계약 신학의 새로운 모색,” 「신학사상」 149 (2010), 65-92.
- 박준서, 김영진, “고대 근동의 국제 관계와 국제 조약에 관한 비판적 연구,” 「구약논단」 12 (2002), 171-211.
- 윌터 카이저, 『구약성경윤리』, 홍용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2.
- 이종근, “히타이트 법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 (2010), 27-52.
- 장미자, “에살하돈 조약(VTE) 저주와 신명기 언약 저주(28장) 비교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제안,” 「Canon & Culture」 3 (2009), 5-36.
- 채홍식, “성결 법전(레 17-26)의 형성에 관한 고찰-레 19:3-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 (2000), 59-82.
- 채홍식 역주, 『고대 근동 법전과 구약성경의 법』, 의정부: 한남성서연구소, 2008.
- 최종원, “복서 셈어에 나타난 계약 본문 안에서의 ‘쉐바’(שֶׁבַע)-스피르(S^cfire) 비문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6 (2011), 123-151.

- 최종원, “레위기 26장 14-33절에 나타난 숫자 칠의 의미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47 (2013), 12-42.
- 크리스토퍼 라이트,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술회출판부, 1995.
- Amsler, S., “*קִּוּם qūm* austehen,” *THAT* 2, 635-641.
- Anderson, B. W., *Contours of Old Testament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 Anderson, J. S., “The Social function of Curses in the Hebrew Bible,” *ZAW* 110 (1998), 223-237.
- Begrich, J., “Das priesterliche Heilsorakel,” *ZAW* 52 (1934), 81-92.
- Buis, P., *La notion d'alliance dans l'Ancien Testament*, LD 88, Paris: Cerf, 1976.
- Cholewiński, A., *Heiligkeitsgesetz und Deuteronomium: Eine vergleichende Studie*, AnBib 66,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6.
- Daube, D., *The Exodus Pattern in the Bible*, All Souls Series, London: Faber and Faber, 1963.
- Douglas, M.,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3-23.
- Dupont-Sommer A. and Starcky, J., “Une inscription araméennes de Sfiré (stèles I et II),” *BMB* 13 (1958), 1-125.
- Eichrodt, W.,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Teil 1-3, Leipzig: J. C. Hinrichs, 1933-1939.
- Elliger, K., *Leviticus*, HAT 4, Tübingen: J. C. B. Mohr, 1966.
- Firmage, E., “Genesis 1 and the Priestly Agenda,” *JSOT* 82 (1999), 97-114.
- Fitzmyer, J. A., *The Aramaic Inscriptions of Sefire*, Biblica et Orientalia 19/A, Rom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5.
- Frankena, R.,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and the Dating of Deuteronomy,” *OTS* 14 (1965), 122-154.
- Grayson, A., “Akkadian Treaties of the Seventh Century B. C.,” *JCS* 39 (1987), 127-160.
- Hartley, J. E.,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 Heintz, J.-G., “Alliance humaine-Alliance divine: documents d'époque babylonienne ancienne & Bible hébraïque-Une esquisse-,” *BN* 86

(1997), 69-94.

Hillers, D. R., *Treaty-Curses and the Old Testament Prophets*, Biblica et Orientalia 16,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4.

Joosten, J.,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SVT 67, Leiden-New York: Brill, 1996.

Joosten, J., "Covenant Theology in the Holiness Code," *ZABR* 4 (1998), 145-164.

Kim, S.-J., "Les enjeux théologiques des bénéficiaires de l'année sabbatique (Lev 25,6-7)," *ZAW* 122 (2010), 33-43.

Kim, S.-J., *Se reposer pour la terre, se reposer pour Dieu: l'année sabbatique en Lv 25,1-7*, BZAW 430, Bosto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2.

Klostermann, A., "Beitrag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ZLThK* 38 (1877), 401-445.

Knohl, I.,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Kutsch, E., "ברית obligation," *TLOT* I, 256-266.

Lohfink, N., "Die Abänderung der Theologie des priesterlichen Geschichtswerks im Segen des Hekligkeitsgesetzes. Zu Lev. 26,9.11-13," H. Gese und H. P. Rüger (Hg.), *Wort und Geschichte*, FS K. Elliger, AOAT 18,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73, 129-136.

Marx, A., *Lévitique 17-27*, CAT IIb, Genève: Labor et Fides, 2011.

McCarthy, D. J., "berît in Old Testament History and Theology," *Bib* 52 (1972), 110-121.

Meeks, M. D.,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Mendenhall, G. E., "Covenant Forms in Israelite Tradition," *BA* 17 (1954), 50-76.

Mendenhall, G. E., and Herion, G. A., "Covenant," *ABD* 1, 1179-1202.

Milgrom, J., *Leviticus 1-16*,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 Milgrom, J., *Leviticus 23-27*, AB 3B, New York: Doubleday, 2001.
- Otto, E., *Theologische Ethik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1994.
- Parpola, S., "Neo-Assyrian Treaties from the Royal Archives of Nineveh," *JCS* 39 (1987), 161-189.
- Peels, H. G. L., *The Vengeance of God: the Meaning of the Root NQM and the Function of the NQM-Texts in the Context of Divine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OTS 31, Leiden-New York-Köln: Brill, 1995.
- von Rad, G.,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E. W. T. Dicken, trans., Edinburgh: Oliver & Boyd, 1966.
- van Rooy, H. F., "The Structure of the Aramaic Treaties of Sefire," *JSem* 1 (1989), 133-139.
- Silva, M.,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 Smith, C. R., "The Literary Structure of Leviticus," *JSOT* 70 (1996), 17-32.
- Steymans, H. U., *Deuteronomium 28 und die adē zur Thronfolgeregelung Asarbaddons: Segen und Fluch im Alten Orient und in Israel*, OBO 145, Freiburg Schw: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 Walton, J. H.,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A Survey of Parallels between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Texts*, Grand Rapids: Zondervan, 1989.
- Weinfeld, M., "ברית berith," *TDOT* II, 253-279.
- Weinfeld, M., "The Loyalty Oath in the Ancient Near East," *UF* 8 (1976), 397-414.
- Weinfeld, M., *Deuteronomy 1-11*, AB 5, New York: Doubleday, 1991.
- Wheelock, B. M., *Latin: An Introduction Course Based on Ancient Authors*, New York: Barnes & Nobles, 1963.
- Zimmerli, W., "Sinaibund und Abrahambund.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der Priesterschrift," *ThZ* 16 (1960), 268-280.

<초록>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

김선종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계약 신학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계약 신학을 매우 편향적으로 이해해 왔다. 계약 신학은 신명기 신학의 전유물이며, 성결 법전은 전통적인 역사 비평 가설에 따라 단지 신명기의 계약 신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을 신명기의 빛에서만 이해할 때, 성결 법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언어와 신학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을 그 자체의 언어와 문맥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성결 법전의 종교성에 관심을 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먼저 성결 법전을 ‘계약이라는 틀로 바라봄으로써, 성결 법전은 계약 체결, 유지, 폐기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성결 법전을 구약 주변 세계의 정치 조약의 구조에 따라 분석하고, 성결 법전의 법조항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윤리의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종교가 정치와 경제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살펴보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통하여 단지 성결 법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인간과 종교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결 법전은 단지 성소 안에 머물러 있던 편협한 제사장들의 산물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한 신앙인들의 문서이다. 성결 법전에 따르면 인간과 종교는 세상과 분리된 게토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시초부터 본질적으로 정치, 경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참여한다.

<Abstract>

Covenant Theology in the Holiness Code

Prof. Sun-Jong Kim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Covenant theology is an essential thought that penetrates the Old and New Testaments. Many commentators, however, understood this theology very narrowly in comparison with its importance. Covenant theology is a monopoly of the deuteronomic theology, and covenant theology of the Holiness Code is based on that of Deuteronomy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hypothesis of the historical criticism. But when covenant theology of the Holiness Code is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at of Deuteronomy, the proper language and theology of Leviticus may not be understood well.

Recent research on covenant theology of the Holiness Code in the context of its language and theology has the limit with focusing mainly on the religiosity of this law code. This article tries to reveal the fact that the Holiness Code can be read in the framework of making, maintaining, and rupturing the covenant. And then we will analyze this law code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the political treaties of the Ancient Near Eastern World and consider the aspects of politics, economics, and ethics of the Holiness Code. By doing this, we will try to seize the essence of the religion in relation to the politics and economics. We also hope that we can tak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humankind and the religion as well as the Holiness Code. Holiness Code is not a product of the narrow-minded priests who stayed only in the sanctuary, but a religious document of the believers who communicated with the outside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Holiness Code, the

humankind and the religion are not protected by the ghetto removed from the world; they are the subjects that actively interpret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problems and involve in those problems.